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80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황운하·이해민·김준형

김재원 · 서미화 · 윤종군

김용민 · 김병기 · 이재관

이병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은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인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은 이를 각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권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코레일유통과 같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여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함.

이에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받은 자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받은 자
	가 임대차 등 계약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그 재산에 관
	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
	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
	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u>3</u> • <u>4</u>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